

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48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4. 2. 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어르신들의 문화·여가·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창중부고령자복지주택(1층)에 “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”을 신규 설치 예정임.
-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사항 반영이 가능한 노인복지서비스 운영 경험과 전문 지식이 탁월한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고자,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

-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4조
 - 「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·운영 조례」 제6조

○ 추진 필요성

-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을 신규 설치함에 있어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참여와 활성화 등이 가능한 운영 경험과 전문 지식이 탁월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안정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함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○ 위탁범위 :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전반

○ 사무내용

-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
-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
-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사업 수행
-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마련 및 관리 등 제반 사항
-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위 치 : 평창군 평창읍 중부로 89, 평창중부고령자복지주택 1층
- 시설규모 : 연면적 837.12m², 지상 1층
- 구 조 : 프로그램실, 건강증진실, 북카페, 구내식당, 사무실 등
- 위 치 도

위 치 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

- 위탁기간 : 2024. 4. 8. ~ 2026. 12. 31.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수탁자격 : 사)대한노인회평창군지회 또는 주사무소가 평창군에 소재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 후 수탁자심의위원회의 선정 심의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2024년도 예산 : 민간위탁금 70,000천원(군비)
 - 인건비(2명) : 38,140천원
 - 운영비(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 등) : 20,000천원
 - 사업비(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 등) : 11,860천원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

-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
 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가능
- 위탁 필요성
 - 노인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 욕구 대응을 위한 전문 서비스 지원 필요
 - 노인 및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등 운영의 효율성 기대 가능
 - 노인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적합
-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
 - 노인들의 취미·여가 활동, 사회참여 지원, 건강 지원 등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로서, 민간위탁으로 수행 시 운영의 탄력성 확보 및 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직영운영방식보다 적합

○ 기타 검토 사항

- 종사자 교육, 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,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, 운영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

자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추진 경과

- 평창중부고령자복지주택 국비지원 공모사업 선정 : 2019. 4. 29.
- LH와 업무협약 체결 : 2019. 9. 10.
- 주택부분 공사완료(임시사용승인) : 2023. 11. 28.
-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위탁금 예산 확정(70백만원) : 2023. 12. 20.

○ 향후 계획

-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인테리어 공사 : 2024. 3월 완료 예정
-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: 2024. 3. 15 ~ 3. 29.
- 서류 접수 : 2024. 3. 25. ~ 3. 29.
-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결정 : 2024. 4. 3.
- 위·수탁 협약 체결 : 2024. 4. 5. 예정

○ 관련법령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4조
- 「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·운영 조례」 제6조

관계법령 발취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·검사·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.

1. 노인, 장애인, 여성, 아동, 청소년, 노숙인 등 복지시설
2. 환경기초시설
3. 문화·관광·체육시설
4. 공원·녹지시설
5. 보건·건강증진시설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등 관련 시설
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
8.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

□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·운영 조례

제6조(위탁관리) ① 군수는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평창군지회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.